##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

## 1. 분리발주 근거 및 예외사항

## ○ 근거

-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제20조제2항,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84조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87조

## ○ 예외사항

-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 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

번호	소프트웨어 제품	수량	제외사유
1	통합관리 플랫폼 -VPP, API 연동 - UI/UX 디자인등	1식	1.분리발주시 각 소프트웨어 납품 및 개발 업체가 2개 이상 존재하게 되면 본 플랫폼
2	재이용배터리 관리 솔루션 - 재사용 배터리 이력 및 성능 관리	1식	개발 및 연동 핵심인 신척저수지 스마트 그린도시 통합관리 플랫폼과(기존시스템) 의 통합 및 연계가 어려워지며, 문제점 해
3	생산/부하 모니터링 솔루션 -재사용 ESS 충방전량 - 기존설비 부하(LED, 역펌핑 등 설비)	1식	결을 위한 협의 결과에 따라 통합 및 연계 를 위한 불가피한 추가 개발 등으로 인해 시스템 구축 부문의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 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
4	데이터 분석/통계/장애알람 등	1식	2.본 과업은 24.12.31일까지 반드시 구축 완료 되어야 하며, 2번의 사유로 인해 신척저수지 스마트 그린도시 통합관리 플 랫폼(기존시스템)과 본 사업으로 추진될 플랫폼간의 연동 및 통합 지연 시 본 사업 진행 및 준공에 대한 지연을 초래 할 수 있음
5	진천 스마트 그린도시 통합 플랫폼 연동 서비스 - 이기종 시스템 연계 및 확장 - API 연동	1식	

㈜ 대연씨앤아이

